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9월 24일

영 동 군 수

1. 목 적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7항에 의거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재해위험이 해소되었으므로,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통해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·고시 하고자 함.

- 2. 행정예고 기간 : 2021. 09. 24. ~ 10. 13.(20일간)
- 3. 의견제출 기간 : 2021. 09. 24. ~ 10. 13.(20일간)
- 4. 공고방법 : 영동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

5. 관련근거

- 가.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제6조(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)
- 나.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

6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대상지

지구명	위 치	지정내용			해제사유	비고
		형 유	등	지정일	MAIIAF	01 74
봉현	영동군 영동읍 봉현리 산77-3번지	붕괴 위험	D	2014.09.17	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해소	
하도대3	영동군 상촌면 하도대리 산14-4번지	붕괴 위험	D	2014.09.17	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해소	
하도대4	영동군 상촌면 하도대리 산14-2번지	붕괴 위험	D	2014.09.17	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 해소	

7. 의견제출

가.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,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영동군 안전관리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출방법 : 우편 또는 팩스(043-740-3909)

다. 제출기한 : 2021. 10. 13까지

라. 보내실 곳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, 영동군청 안전관리과

마. 문 의 처 : 영동군청 안전관리과 재난예방팀(043-740-3934)

바.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붙임 의견서 1부. 끝.

의 견 제 출 서

※ 이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

* AIII-1 11-1/19	5 NT 40000 1 110	-1-1.				
의견제출인	성명					
	주소			전화번호		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	l 제목				
	당사자	성명(명칭)				
		주소				
			(전화번호	Σ:)
	의 견					
	기 타					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						
				년	월	일
		의견제출인		(人	1명 또는	인)
영 등	통 군 수	귀하				

유의 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-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